



의안번호	제79호
------	------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6. 13.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	------

제출연월일 : 2019. 6.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논산시 노인 등에게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도시와 차별 없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실질적·포용적 복지실현 하고자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대중교통 이용지원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안 제3조)
- 다.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 및 방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대중교통요금의 청구 및 지원 중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마.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후관리(안 제9조)
- 바. 적용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 2) 「노인복지법」 제 26조 및 시행령 제19조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6조,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22조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9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필(규제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9. 4. 29. ~ 5. 1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041-635-4561)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 시내버스 ”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 농어촌버스 ”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 수요응답형버스 ”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 마을버스 ”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 공영버스 ”란 「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 노인 등 ”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75세 이상인 사람

나.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3.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 라 한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증
2. 독립유공자유족증
3. 국가유공자증
4. 국가유공자유족증
5. 장애인등록증

제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도 로 교 통 과 장	김 용 신
	교 통 지 원 팀 장	김 영 중
	담 당 자	김 창 수 (746-6282)

[별표]

대중교통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만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	100분의 30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 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 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제2조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3조(책무)

-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교통지원 대상자

(단위 : 명)

구분	총계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비고
		만75세이상 (100%)	계	1~3급 (50%)	4~6급 (30%)	계	본인 (100%)	유족 (30%)	
2019년	15,087	15,087							
2020년	28,495	16,290	10,798	4,442	6,356	1,407	1,071	336	
2021년	29,657	17,493	10,762	4,429	6,333	1,402	1,067	335	
2022년	30,819	18,696	10,726	4,416	6,310	1,397	1,063	334	
2023년	31,981	19,899	10,690	4,403	6,287	1,392	1,059	333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만75세 이상 제외

나. 추계의 결과

○ 교통지원 손실금액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출	일반회계	14,912,837	1,098,375	3,191,506	3,366,245	3,540,984	3,715,723
만75세 이상고령자		11,783,387	1,098,375	2,404,858	2,582,545	2,760,051	2,937,647
장애인	1~3급	43,525		10,929	10,897	10,865	10,833
	4~6급	1,656,738		416,445	414,938	413,431	411,924
국가유공자	본인	1,306,116		328,273	327,142	325,915	324,689
	유족	123,069		30,905	30,813	30,721	30,629

※ 산출기초

- 만75세 이상 (1일 왕복요금×365일×인구)×경제활동(15%)×사망율(3.7%)
- 장애인 1~3급(1일 왕복요금×할인율(50%)×365일×인구)×경제활동(5%)×사망율(3.7%)
 장애인 4~ 6급(1일 왕복요금×할인율(30%)×260일×인구)×경제활동(30%)
- 국가유공자 본인(1일 왕복요금×365일×인구)×경제활동(30%)
 유족(1일 왕복요금×할인율(30%)×365일×인구)×경제활동(30%)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4,912,837	1,098,375	3,191,506	3,366,245	3,540,984	3,715,723
도 비(50%)	7,456,418	549,187	1,595,753	1,683,122	1,770,492	1,857,861
시 비(50%)	7,456,418	549,187	1,595,753	1,683,122	1,770,492	1,857,861

4. 작성자

도로교통과장 김 용 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098,375	3,191,506	3,366,245	3,540,984	3,715,723	14,912,833	
국 비						0	
기 금						0	
도 비	549,187	1,595,753	1,683,122	1,770,492	1,857,861	7,456,415	
시 비	549,187	1,595,753	1,683,122	1,770,492	1,857,861	7,456,415	
세 출	1,098,375	3,191,506	3,366,245	3,540,984	3,715,723	14,912,833	
307 민간이전 09 운수업계보조금	1,098,375	3,191,506	3,366,245	3,540,984	3,715,723	14,912,833	
재원 조달	1,098,375	3,191,506	3,366,245	3,540,984	3,715,723	14,912,833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549,187	1,595,753	1,683,122	1,770,492	1,857,861	7,456,41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49,187	1,595,753	1,683,122	1,770,492	1,857,861	7,456,415
	지방세	549,187	1,595,753	1,683,122	1,770,492	1,857,861	7,456,415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농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0.3.15>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u>공영버스</u>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2. 2. 17., 2015. 12. 22.>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 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5.18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시·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나.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다.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라.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마. “공영버스”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만75세 이상인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3. “교통카드”란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한다.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

스 운수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